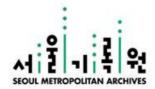
#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1. 3. 18. (목) 14시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심의 안건
  - 〈안건1〉 토지수용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2〉 30년 경과 재산관리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3〉 30년 경과 민원문서의 공개범위



# 〈안건1〉

# <u>토지수용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u>

# 기록개요

- □ 생산부서: 수용재결 추진 부서(현: 토지관리과)
- □ 생산시기: 1959년 이후(30년 경과 + 미경과)
- □ 업무기능
  -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업무절차
    - (협의) 토지(물건)조서 작성(사업시행자) →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사업 시행자) → 매수협의 → 계약체결
    - (수용) 사업인정신청(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 → 매수협의 → (협의 미성립시) 재결신 청(사업시행자) → 재결신청서 공고·열람(시군구)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토지수용위원회) →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토지수용위원회) → 다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서 송달(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지급, 토지등 인도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소유자)

####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주요기록	포함 정보	
수용재결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 소유자와의 협의경과설명서 토지(물건)조서(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 기타(도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외)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법인 정보(법인명,대표,주소,전화번호 등) 감정평가사 정보(성명,날인) 사업명, 평가목적, 평가금액, 평가기준	

평가액 산출근거 및 평가의견	
	토지 평가조서
	소유자 정보(성명 등) 포함여부는 건별로 상이
수용재결서	피수용자(소유자) 성명,주소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성명 보상내역(보상대상, 보상액, 피수용자) 재결이유

# 2 공개검토

#### □ 업무부서의 공개 현황

- 생산시기와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의 토지수용 관련 기록만 공개(타인의 보 상,수용 관련 기록은 비공개)
- 수용재결서는 '부동산정보광장' 웹사이트 내 '재결서열람신청' 메뉴를 통해 본 인확인을 거쳐 소유자·관계인·대리인 확인되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공공안전).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 사유 :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관련 사례

○ 감정평가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다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 할 의무가 있음(서울행법 2005구합33241)

####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 신청인 토지를 제외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감정평가내역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6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 ○ 동 토지실거래(수용보상거래 포함) 세부정보(토지지번, 거래일자, 실 거래가 등)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거래당사자의 사적 활동에 속하며,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5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정보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시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중앙행심 2013-06580)

#### □ 검토 사안

- ① [토지조서]가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6호)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3호)인지 여부
- ☞ 검토결과 : 토지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과 보상계획, 수용재결신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22,31조)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일반에 고시·공고하는 정보로서, 토지소유자(개인,법인) 정보를 제외한 토지의 내역 정보(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는 공개된다고 하여 소유자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의 이익이 더 크므로 공개
  - ② [감정평가내역, 보상금액] 등의 정보가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6호)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3호)인지 여부
- ☞ 검토결과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 및 보상금액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③ [감정평가내역, 보상금액] 등의 정보가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6호)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 장을 주는 정보(3호)인지 여부
- ☞ 검토결과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 및 보상금액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경우 30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후에는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내역을 쉽게 추정하기 어려워 공개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30년 공개 원칙)에 의해 공개
  - ④ 수용재결신청서 내 [소유자와의 협의경과] 정보가,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
- ☞ **검토결과** : 소유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단 30년이 경과한 경우는 내용

중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보다 세밀하고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⑤ [30년 경과] [개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범위

プ 검토결과: 개인의 성명, 주소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함이 원칙이나 생산 30년이 경과한 재산권 관련 기록의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수준으로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 않고, 가족 등 관계인의 기록 조사시 도움이 되므로 성명의 성(姓) 및 주소의 일부(시군구) 일부 공개 가능(2020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 ⑥ 토지소유자(관계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주소]의 공개여부

☞ 검토결과 : 법인등의 재산 내역 및 가격, 보상정보는 공개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인등의 명칭과 주소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 ⑦ [30년 경과] 토지소유자(관계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주소]의 공개 범위

☞ 검토결과 : 법인등의 소유 토지내역, 보상(수용)금액의 정보는 3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개하여도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 가능

# ⑧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 내 [감정평가인의 성명과 서명,날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검토결과 : 수용재결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평가를 수행,심사한 개인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마목에 의거 공개 가능(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⑨ [수용재결서]의 공개여부

☞ **검토결과**: 행정심판재결서 및 소송 판결문이 (개인등 비식별화 전제시) 원칙 적으로 공개 대상이므로 수용재결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제거시 공개 가능

#### □ 공개여부

#### 30년 미경과 기록

- 부분공개 : 기록 내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나머지 정보가 분리 가능하며 비공개 대 상정보를 제거하여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면 비공개가 아닌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 ▶ 소유자(관계인)의 정보: 개인의 성명,주소, 법인(단체)명칭과 주소
    - ▶ **금액정보**: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공시지가 대비 비율), 보상금액
    - ▶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경과 내용(수용재결신청서 내)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6호,7호

#### 30년 경과 기록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 ▶ 소유자(관계인)의 정보 일부: 개인의 성명 중 이름부분, 개인의 주소 중 동이하 부분
  - ▶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경과 내용 일부(수용재결신청서 내) : 특별히 사적 인 내용이나 개인이 특정 가능한 부분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6호

# <안건2>

# 30년 경과 재산관리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 기록개요

□ 생산부서 : 재산관리 추진 부서(현:자산관리과) 및 도시개발 관련 부서

□ 생산시기 : 1950년대 이후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주요 기록	설명	포함정보
시 유재산 대장	시에서 소유·관리하는 토지,건 물에 대한 명세를 기록한 대장/ 카드/목록	등기일자 토지의 정보(소재지,지번,지목,면적) 용도, 회계 관리현황(임대,매각 등) 매각상황(매각일자, 매수인, 매각금액) 등
재 산 매 각 카드	시에서 소유·관리하는 토지,건 물의 매각현황을 기록한 대장/ 카드/목록	토지의 정보(소재지,지번,지목,면적) 매각정보(계약일,매각금액,이행현황,소 유권이전현황 등) 매수인정보(성명,주소) 등
매매계약 서	시-매수자(매도자) 간 토지,건 물 등 매매계약서	토지의 정보(소재지,지번,지목,면적) 계약정보(계약일,계약금액,일정,특약 등) 계약자정보(성명,주소,날인) 등
등기권리 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	매도증서 부동산표시 등기권리자 등

# 2 공개검토

- □ 업무부서의 공개 현황: 비공개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 전),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 사유 : 계약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 관련 사례

○ 부안군에서 관리 중인 국유지와 군유지 관리대장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국·공유재산 목록은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정보임. 또한, 청구인의 정보 청구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주는 것이나, 관련 법에서는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전북행심 2008-282)

○ ○ 중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국유 지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공개(법령 해석례 03-0037)

○ 사유림 매수 현황(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 활용 현황)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 32%를 목표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 등을 매입하여 국유림율을 확대하고 있는 바, 소재 지번과 면적, 매수 이유, 매수 목적, 매수 금액, 현재활용 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임(중앙행심 2011-30387)

#### □ 검토결과

#### ○ 시유재산대장의 공개여부

☞ 검토결과 : 비공개 - 시유재산대장은 시 보유 재산 내역을 모아 정리한 장부로서, 3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유효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 우려, 토지관련 사기 우려 등의 비공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8호)

#### ○ 재산매각대장의 공개여부

☞ 검토결과: 부분공개 - 재산매각대장은 시유재산대장과는 달리 매각이 완료된 토지의 매각 내역을 기재한 장부이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도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으므로 매수인 성명 중 이름 및 동이하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매매계약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 매수인 성명 중 이름 및 동이하 주소를 제외하고 토지내역, 계약금액, 약정내용 등은 공개 가능(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등기권리증

☞ **검토결과 : 비공개**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안건3>

# 30년 경과 민원문서의 공개범위

# 기록개요

□ 생산부서 : 기관공통

□ 생산시기 : 1950년대 이후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 진정서, 탄원서, 각서, 진술서, 확인서, 이의신청서, 건의서 등 다양한 형태 로 존재
- 민원제기인은 개인,법인,단체,일시적인 결사체 등 다양함
-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 식별정보와 개별 민원 내용을 포함

# 2 공개검토

- □ 업무단계에서의 공개 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에 의해 민원인 정보 및 내용 모두 비공개
- □ 관련 사례
  -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타인이 제출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
-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함
- 청구인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보낸 진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요청 정보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경남행심 2011-192)
- '13.3.2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원내용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 ○ 종합복지관 관련 제기된 민원내용, 민원인 성명, 민원처리결과

특정 사건 관련 민원에 대한 공개요구로,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민원인(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 개 권고

#### □ 주요 검토사안

-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식별정보 제거시 민원 내용 공개 가능 여부
- ☞ 검토결과: 개인의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제외한 내용은 공개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적으므로 공개가능. 단, 전후 기록물 맥락상 민원인 정보를 제거하여도 관련 정보와 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민원 내용 비공개

# ○ 민원인이 법인등인 경우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 공개 가능 여부 ☞ 검토결과

[민원인 정보] 법인등의 명칭,주소,대표자,대표번호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는 법인등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가능

[민원내용] 30년이상 경과한 민원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법인등의 현재의 경영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공개. 단, 사안이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의 경영상 이익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 비공개

# ○ 민원인이 법인이나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 대표자 의 성명,주소 공개 가능 여부

예: 000를 반대하는 모임 대표 OOO, 00동 거주자 일동 OOO의 XX명

\* 검토결과: 단체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보다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이 더 크며, 성명을 전부 공개했을 때의 알권리 상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명 중 성(姓)만 공개 및 주소는 시군구 까지만 공개

#### □ 공개여부

####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

- 민원인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날인 등) : 비공개
- · 민원 내용 : 사안별 판단
  - 전후 기록물 맥락상 민원인 정보를 제거하여도 관련 정보와 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민원 내용 비공개
  - 개인의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민원 내용은 비 공개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민원인이 법인등인 경우]

- · 민원인 정보(법인등의 명칭,주소,대표자 등) : 공개
- · 민원 내용 : 원칙적 공개
  - 단,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의 경영상 이익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 [민원인이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

- · 집합의 대표자 정보(성명,주소) : 성명 중 성(姓)과 시군구 까지의 주소 공개
- · 민원 내용 : 원칙적 공개
  - 개인의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민원 내용은 비 공개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2021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2021년 3월

행정**국** (서울기록원)

# 2021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 18.(목) 14:00~16:00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10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박종연

- 내부위원(3):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권도석(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3): 서수런(간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 ◆ 안 건

〈안건1〉 토지수용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안건2〉30년 경과 재산관리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안건3〉30년 경과 민원문서의 공개범위

# ◆ 회의결과

# 〈안건1〉가결

- 30년 미경과 기록: 부분공개
- 소유자(관계인)의 정보(개인,법인등의 성명,명칭,주소) 및 금액정보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 산출 수치, 보상금액 등), 소유자와의 매수협 의경과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함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6호,7호
- 30년 경과 기록: 부분공개
- 소유자(관계인)의 정보 일부(개인의 성명 중 이름부분, 개인의 주소 중 동이하 부분) 및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경과 내용 일부(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특정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6호

#### 〈안건2〉가결

○ 시유재산대장: 비공개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8호

○ 재산매각대장: 부분공개

- 개인정보 일부(매수인 성명 중 이름 및 동이하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 함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8호

○ 매매계약서: 부분공개

- 개인정보 일부(매수인 성명 중 이름 및 동이하 주소)를 제외하고 토지 내역, 약정내용 등은 공개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등기권리증: 비공개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안건3〉수정가결

-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 부분공개
- 민원인 개인정보 제거
-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되,
- 민원 내용에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또는 전후 기록물 맥락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민원내용 비공개 가능
- 민원인이 법인등인 경우: 원칙적 공개
- 민원인 정보(법인 등의 명칭,주소,대표자 등)은 공개
-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의 경영상 이익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비공개 가능

- 민원인이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 부분공개
- 민원인 단체(집합)의 대표자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거(성명,주소 등)
-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민원내용의 비공개 가능

# □ 주요 발언 내용

#### ▶ 개회

#### 〈위원장〉

- 7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하여 2021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의됨
- 안건 및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음. 회의 종료후 이메일을 통해 심의의결서의 위원별 서명을 받도록 하겠음

# ▶ 〈안건1: 토지수용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심의

#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 ○○○ **위원** : 기록원 검토 의견과 동일
  - 000 위원
    - · 감정평가내역, 보상금액 등 금액정보: 사안별로 공개여부 확인 필요
    - · 30년 미경과 수용재결신청서 내 소유자와의 협의경과 정보: 개인정보 제거 후 공개

· 토지소유자(관계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 및 주소의 공개여부: 법인정보 제거 후 공개

#### (()() 위원)

- 동일한 유형의 기록이라도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 이번 심의회에서 공개로 결정하게 되면 향후 유사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개별 기록에 따라 이해관계 지속되거나 소송 관련 내용 등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 확인없이 결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이번 사안 중 '30년 미경과 기록의 감정평가금액, 보상금액'의 경우, 기록관에서 5년주기 재분류를 거친 후 지금 심의회에 상정된 기록물인지, 아니면 그냥 기간이 경과해서 심의회에 상정된 것인지 궁금
- 개인정보나 법인정보 등을 제거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종료된 사안도 있고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사안도 있을 것임.
- 본 심의의 결과를 모든 건에 다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함

# 〈간사〉

- 이 안건에 관련되는 기록은 수만건에 달할 정도로 수량이 굉장히 많음. 그리고 이 기록들은 동일한 유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동종다량의 기록에 대해 개별 건별로 검토와 심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였음
- 이 기록들은 기록관에서 기록원으로 이관할 때 부여된 공개값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정보를 포함한 기록임에도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다양한 공개값을 가지고 있음. 이 기록 유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공개검증 수행시 판단의

#### 기준으로 삼고자 심의회에 상정하였음

#### (000 위원)

- 건수가 너무 많아서 동일한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이해는 됨.
- ○○○ 위원께서 소송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이 사안에서 어떤 것들이 소송 우려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

#### ( ) ( ) 위원 )

- 토지수용 관련하여 당장은 아니라도 소송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감정평가내역의 경우도, 재산권 다툼이 있을 때 많이 활용된다고 알 고 있음. 사안에 따라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봄

#### (○○○ 위원)

수용재결 절차에 의해 수용이 완료된 건이므로 향후 소송까지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

#### (000 위원)

- 본 상정안은, 30년 미경과 기록의 경우 일반적 통상 입수가능한 정보와의 조합으로 개인의 재산내역이 쉽게 추정가능하고, 30년 경과 기록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 같음
- 하지만, 공개여부가 단 한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사안별로 내용을 판단하여, 30년 경과시에도 공개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민원 여지도 있음

# <○○○ 위원〉

○ 30년 경과 시 공개가 원칙이긴 함

#### **(**○○○ 위원)

○ 30년 경과 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자유 등의 침해가 뚜렷한 경우 부분공개/비공개 가능할 것임

#### (000 위원)

○ 30년 경과 원칙을 적용해도 큰 문제 없다고 보임

#### (○○○ 위원)

○ 30년 기준으로 보되, 30년 미경과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포함해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 위원〉

○ 이번 심의에 의해 기준을 결정하면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기록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

#### 〈간사〉

○ 이번 심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음

#### ( ) ( ) 위원 )

○ 이번 심의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원문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간사〉

○ 공개인 기록이라도, 순전히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기록들은 원문공개가 아닌 열람신청에 의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 다루는 공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부분공개 기록이 대다수임

#### (○○○ 위원)

○ 이번 심의 안건의 30년 미만 기록은 공개재분류 대상은 아닌 것인지

# **(**○○○ 위원)

○ 이관된지 1~2년밖에 안된 기록이므로 재분류 시기가 도래한

# 기록은 아님

#### 〈간사〉

○ 재분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록이지만, 개인정보 및 감정평가금액 정보 포함의 이유로 부분공개로 이관된 기록도 있고, 동일정보의 기록임에도 공개로 이관된 기록도 있는데, '공개'로 이관된 기록이라고 해서 정보공개 대응시 그대로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없어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음

#### (○○○ 위원)

○ 심의 상정의 취지에 대해 이해 하였음. 30년 경과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함

#### 〈간사〉

○ 30년 경과 기록에서 토지소유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당초 기록원의 검토의견은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정보이므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으나 ○○○ 위원님은 법인정보 제거 후 공개 의견을 주셨음.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드림

#### <○○○ 위원〉

○ 이 부분은 의견을 변경하겠음. 기록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 〈위원장〉

- 안건1에 대해 다른 의견 없는지 (위원 일동: 동의)
- 안건1은 기록원의 상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음
- ▶ 〈안건2: 30년 경과 재산관리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기록원 상정안과 동일

#### 〈위원장〉

- 당초 안건대로 의결해도 되겠는지 (위원 일동: 동의)
- 안건2을 기록원의 상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음
- ▶ 〈안건3: 30년 경과 민원문서의 공개범위〉심의

#### 〈간사〉

- 안건 설명
- O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세부안건별로 진행하겠음
  -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거시 민원 내용 공개 가능 여부
    - · ○○○ 위원 : 사안별 공개여부 검토 필요

#### (()() 위원)

○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 등 10년,20년씩 동일사안으로 지속되는 민원, 사인간의 민원 등 사례가 다양함. 실제 기록 확인 전에는 공개여부 판단 어려운 경우 많아 사안별 판단 필요.(예:구룡마을 등)

# <○○○ 위원〉

○ 안건설명에 의하면 사안별 공개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 위원〉

- 기본적으로 민원처리시에 비실명처리한 민원사례들을 공개하는 경우 많아 큰 문제 없음
- 민원담당 중앙부처에서는 비실명처리한 민원사례를 재결례집으로 발간하고 있음

#### (()() 위원)

○ 30년 경과한 민원기록이 왜 존재하는지

# 〈간사〉

○ 기록철 자체가 민원철이면 보존기간 10년 설정되는 경우 많고 이미 폐기된 경우가 많을 것이나, 중요 사업에 대한 일련의 추진과정이 하나의 철로 편철된 경우 그 안에 민원 서류가 포함된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 민원건들만 분리해서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보유하게 됨

#### (000 위원)

○ 원래 설정된 보존기간과 공개값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간사**〉

 보존기간은 철 단위로 책정이 되고 공개여부는 건 단위로 책정이 되는데, 유사한 민원의 경우에도 비공개로 설정된 경우, 부분공개로 설정된 경우 다양하여, 원칙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위원)

○ 30년이상의 보존기간으로 책정되어 이관된 기록물이지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의 적정성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 후에 공개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임

#### (000 위원)

○ 일반적인 민원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일텐데, 여기에 있는 민원 기록의 경우 소송과 관련한 기록이 많은 것인지

# 〈간사〉

- 소송이나 당시의 큰 현안 관련 민원, 지속되는 민원 등이 있음
- 보존기간 상향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존기간 하향은 아직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당분간은 기존의 보존기간을 하향하는 조치는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민원문서만 따로 편철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철단위 보존기간 책정에 의해 보존기간 하향 가능성 크지 않음

# <○○○ 위원〉

하나의 철에서 특정 건에 대해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니,문서철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임

#### (()() 위원)

○ 몸통이 30년인데 팔다리가 5년이라면 몸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 (000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사안별 검토가 필요함. 문서철 안의 한 건만공개하는 경우는 전체 철의 맥락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장〉

- 30년 경과 기록에서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 부분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위원 일동 동의)
- 부분공개로 의결하겠음
- 다음, 민원인이 법인 등인 경우에 대해 안건설명과 사전검토의견 설명 요청

# 〈간사〉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추가의견 없음
  - 민원인이 법인등인 경우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단 현재의 경영상 이익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부분공개

# 〈위원장〉

- 민원인이 법인 등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 공개로 의결하겠음 (위원 일동 동의)
- 다음, 민원인이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에 대해 안건설명과 사전검토의견 설명 요청

#### 〈간사〉

- 민원인이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주소 등 공개여부 및 민원 내용의 공개여부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 위원 : 추가의견 없음
  - ○○○ 위원 : 원칙적 공개(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 우려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위원 : 사안에 따라 구분 필요
  - ○○○ 위원 : 공개

#### (()() 위원)

○ 일시적인 결사체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간사〉

○ "00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모임", "00의 이전을 반대하는 모임", "00외 XX명"등의 사례가 있음

# ( ) ( ) 의원 )

○ 성,시군구까지 공개하는 것이라면 부분공개로 보임

# 〈간사〉

○ 혹은 성명,주소 모두 가려야 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함

**⟨○○○, ○○○, ○○○ 위원⟩** 

○ 이 경우에는 개인에 준하여 판단해야 함. 개인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봄

# 〈위원장〉

- 일시적인 집합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애매할 수 있음
- 부분공개이되, 개인의 성격이 더 크므로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에준하여 공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동의하시는지 (위원 일동 동의)

○ 부분공개로 의결하겠음

#### 〈간사〉

○ 기존 안건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나, 추가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음. 민원인이 법인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외에 다른 직함을 가진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표 외의 다른 인원의 성명을 제거해야 할 것인지

#### (000.000 위원)

-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임
- <○○○ 위원〉
-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개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의 성명은 비실명처리가 필요할 것임

#### (000 위원)

○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위원장〉

- 부분공개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위원 일동 동의)
- 의결한 내용에 대해 의결서 작성 및 확인하겠음

#### <○○○ 위원〉

○ 상정 안건별로 기록물의 대상량이 확인이 가능한지

# 〈간사〉

○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량은 안 나온 상태고 많다는 정도로만 파악이 되고 있음

# ()) 위원》

○ 현재는 계속 이관이 진행중에 있어서 정확한 수량이 파악하기 힘들 수 있으나. 앞으로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지금까지의 양과 추가되는 기록의 양이 파악되고 공유되었으면 함. 통계화할 필요가 있음.

#### 〈간사〉

○ 현재 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수량 등 통계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000 위원)

○ 같은 기록물철에서 공개값이 달라지는 경우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 국가기록원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기록이라도 케이스별로 심의하고 있으므로 서울기록원도 그렇게 하는게 어떨지

#### 〈간사〉

- 국가기록원 공개심의회에서 기록철별로 심의하는 경우 심의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음. 다량의 다양한 유형의 기록에 대해 나열되어 있으나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제외 공개"와 같이 간단한 경우들을 보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케이스별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음.
-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음

# 〈간사〉

○ 심의의결서 확인

- 〈안건1〉: 가결

- 〈안건2〉: 가결

- 〈안건3〉: 수정가결

-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부분공개

개인식별정보 제거시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전후 기록물 맥락상 개 인식별이 가능하거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민원 내용 여부에 따라 사 안별 검토하여 결정

- 민원인이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 부분공개

민원인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전체를 제외하고 공개

- 민원인이 법인 등의 경우에도 최대한 개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 그 외의 사안은 상정안대로 가결

#### 〈위원장〉

작성내용에 오류가 있음. 민원인이 법인 등의 경우에는 성명 등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작성내용이 다름

#### 〈간사〉

○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당회장 ○○○, 서기 ○○○"의 경우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직함을 가진 성명도 제거해야 하는 것인지

**⟨**○○○, ○○○, ○○○ 위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공식적인 종교법인이고, 종교법인에 등록된 직책이므로 일시적인 집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공개가능할 것임

#### 〈위원장〉

- 재작성분 확인 요청
- 민원인이 개인인 경우 :부분공개
  - 민원인 개인정보 제거
  -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되, 민원 내용에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또는 전후 기록물 맥락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민원내용 비공개 가능
- 민원인이 법인등인 경우 : 원칙적 공개
  - 민원인 정보(법인 등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은 공개
  -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의 경영상 이익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사안에 따라 비공개 가능
- 민원인이 일시적인 집합인 경우 : 부분공개
  - 민원인 단체(집합)의 대표자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거 (성명,주소 등)
  - 민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별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이 유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민원내용의 비공개 가능

- 모두 동의하면 메일로 서명 받도록 하겠음
-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 〈보존서비스과장〉

○ 다음 위원회는 6월 셋째주(6/14~6/18) 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일정을 잡도록 하겠음. 끝.